



대구대학교와 2·18안전문화재단의  
상호교류협약서



대구대학교(이하 대학이라 한다)와 2·18안전문화재단(이하 재단이라 한다)은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, 홍보 및 안전 사업을 펼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2·18안전문화재단의 대구트라우마센터(가칭)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양 기관의 상호 협조 및 교류의 내용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재단은 대구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, 대학은 대구트라우마센터 사업의 운영에 참여한다.
- 나. 대학은 대구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소속 교원의 겸임을 허가하고, 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.
- 다. 재단과 대학은 재난안전에 관한 제도 및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협력한다.
- 라. 재단과 대학은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데 협력한다.

**제3조(협약 조정)** 본 협약 후 해석상의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변경한다.

**제4조(협약의 이행)** 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

이행하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재정부담) 본 협약의 이행으로 인해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제7조(효력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. 8. 24.



총장 홍덕률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이사장 김태일

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9